

보도시점
(엠바고)

2026. 8. 28.(금)
배포 후 즉시 사용

배 포 일

2026. 8. 28.(금)

승고한 나눔 실천한 장기기증 유가족,

‘복지위기 알림’ 으로 촘촘히 보듬는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복지위기 알림’ 협력 업무협약 체결 -
- 전문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 네트워크 활용해 유가족 상시 신고체계 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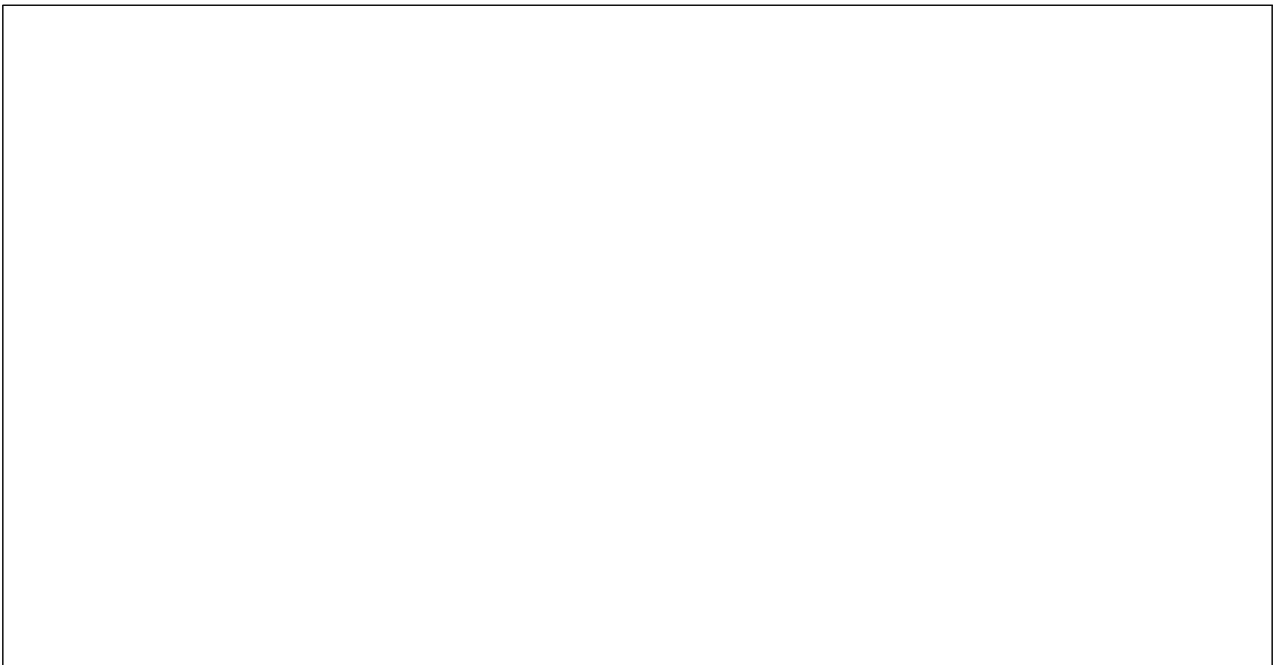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8월 27일(목)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과 함께 ‘장기기증 유가족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 공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기 쉬운 장기기증 유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유가족 상담 및 예우 물품 지원 과정에서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알림으로써 복지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함께 높여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소속 전담팀(사회복지사 및 코디네이터)은 유가족 상담 중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유가족 예우 물품상자 및 슬픔극복 도서 배송 시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안내 홍보자료를 동봉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현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살피는 전문 인적 네트워크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송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 유가족분들이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유가족들에게 이번 협약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보원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진 설명: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왼쪽)과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오른쪽)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붙임]

1. 업무협약 개요
2. 업무협약서

담당본부	복지안전본부	책임자	박미야 본 부 장	02-6360-6460
담당부서	복지 안전 사업부	담당자	박성주 부 장	02-6360-6441

□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장기기증 유가족의 갑작스러운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적시 지원을 위한 협력
- 추진내용 :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 협약 개요

- 대상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협약기간 : 2026년 ~ 2028년(3년간)
- 협약일정 : 2026. 8. 27.(목), 10:30 ~ 11:3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참 석 자 : 양 기관 기관장 및 관련 인사 총 11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김현준 원장, 박미야 본부장, 박성주 부장 등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이삼열 원장, 강현진 본부장, 이명화 부장 등
- 협약 주요내용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 활성화
 - 기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홍보 등 공동사업 추진
 -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업무협약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하 ‘협약당사자’)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당사자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동반자적 관계에서 성실한 자세로 상호 협력하고, 협약 내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협약범위)

협약당사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 활성화
나. 기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홍보 등 공동사업 추진
다.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비밀유지)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상호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효력)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 간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당사자 중 일방이 그 효력의 정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6조(해석 등)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협약의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통상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7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8월 2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김 현 준



원장 이 삼 열